

회장선거관리규정

2016. 9. 27. 제정

2020. 11. 5. 개정

2024. 10. 20.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2조 및 대한장애인배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정관 제23조에 의거 협회 회장 선출을 하기 위한 선거(이하 “회장선거”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05.〉

제2조(적용범위) 회장선거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이 정한 바에 의하며, 필요에 따라 별도세칙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05.〉

제3조(선거사무관장) 회장선거 사무는 사무국에서 관장한다.

제 2 장 선거관리위원회

제4조(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협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회장선거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05. 개정’24.10.20.〉

② 위원회는 5명 이상 7명 이내의 인사로 구성하되 협회 임원이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임원 이외의 인원은 협회 직원이 아니면서 선거인을 추천하는 어떠한 단체에도 소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한정한다.〈개정 ’20.11.05.〉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인사 중에서 회장이 추천한 자로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회장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 및 협회 정관 29조2항에 따라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위원을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개정 ’24.10.20.〉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협회 사무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05.〉

제5조(선거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 ’20.11.05.〉

1. 선거공고
2. 제8조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정〈개정 ’20.11.05.〉
3. 입후보 등록 고지
4. 선거권 및 피선거권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검토 및 조치

5. 선거운동의 제한, 정견발표에 관한 관리
6. 투표용지에 관한 업무
7. 선거(투·개표)에 관한 업무
8. 선거의 연기 및 재선거에 관한 업무
9. 제9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10. 공명선거에 관한 업무
11. 당선자 보고 및 선포
12. 선거지침에 관한 업무
13. 불법, 부정 선거운동 감시 및 조사, 단속에 관한 업무
14. 기타 가맹단체운영규정, 협회 정관 또는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개정 '20.11.05. >

제3장 회장선출기구 및 선거인<개정 '20.11.05. >

제5조의2(회장선출기구)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2조 제2항 및 협회 정관 제23조에 따라 이 규정 제6조에서 정한 선거인단이 회장선출기구가 된다.<개정 '20.11.05. >

제6조(선거인) ①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2조 제2항 및 협회 정관 제23조에 따른 회장선출기구의 선거인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구성된다.<개정 '20.11.05. >

1. 시·도지부의 장<개정 '20.11.05. >
 2. 전국규모연맹체의 장
 3. 선수대표 4명(선수위원장은 당연직, 선수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3명)<개정 '20.11.05. >
 4. 지도자 대표 2명(지도자협의회장은 당연직, 지도자협의회에서 선출된 위원 1명)<개정 '20.11.05. >
 5. 심판 대표 2명(심판위원장은 당연직, 심판위원회에서 선출된 위원 1명)<개정 '20.11.05. >
- ② 선거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18세 이상(정기 등록일 기준)<개정 '20.11.05. >
 2. 선수대표는 협회에 2년 연속(당해연도 포함) 선수 등록을 필한 자<개정 '20.11.05. >
 3. 지도자대표는 협회에 2년 연속(당해연도 포함) 등록된 지도자로 다음 중 1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개정 '20.11.05. >
- 가. 최근 3년 내 협회가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총 4회 이상 참가한 자<개정 '20.11.05. >
- 나. 10년 내 국가대표지도자(코치 이상)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1.05. >
- 다. 10년 내 전임지도자 또는 실업팀 지도자(감독, 코치)로 선임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11.05. >
4. 심판대표는 협회에 2년 연속(당해연도 포함) 등록된 심판으로 최근 3년 내 협회가<개정 '20.11.05. >
- 주최·주관하거나 승인한 전국규모 대회에 연 1회 이상 총 4회 이상 심판으로 활동한 자

〈개정 '20. 11. 05.〉 〈개정 '24. 10. 20.〉

- ③ 제1항 제3호의 선수대표에는 비장애인 선수는 포함되지 아니하며, 또한 다종목에 등록한 선수와 지도자를 겸하고 있는 선수는 1인 1표로 제한한다.
- ④ 지도자와 심판 모두 등록된 자는 1인 1표제로 제한한다.
- ⑤ 제1항 각호에 의한 선거인은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2조 제5항 및 협회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협회 회장선거 전에 새로이 선출된 자로 한다. 다만 제1항 1호의 선거인은 시·도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며, 시·도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하지 아니한 시·도지부는 협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하되, 협회 회장 임기만료일을 경과하여 임기가 남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 11. 05.〉

제7조 (선거인 추천요청)〈개정 '20. 11. 05.〉 ① 협회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80일까지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시·도지부, 전국규모연맹체, 선수위원회, 지도자협의회 및 심판위원회에 선거인 수를 통보하고, 해당단체 및 위원회는 회장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인을 추천하도록 한다.〈개정 '20. 11. 05.〉

제8조 (선거인명부 작성)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7조에 의한 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선거인 추천 명단을 토대로 중복여부 및 자격 유무를 검토하여 선거인 명부(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 11. 05.〉

② 선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선거인으로 추천된 경우에는 재추천 요청없이 배제하여야 한다.

제9조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과 결정)〈개정 '20. 11. 05.〉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라 작성된 선거인명부를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후보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개정 '20. 11. 05.〉

②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후보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열람 기간 내에 구술 또는 서면으로 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 11. 05.〉

③ 제2항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의 다음날까지 이를 심사·결정하되,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결정할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유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선거인명부의 열람 기간은 3일로 한다.

⑤ 선거인명부는 열람 기간 종료일 다음날 확정한다.

⑥ 〈삭제 '20. 11. 05.〉

제4장 후보자 자격 및 등록

제10조 (선거일 등의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 개시일 전일에 선거일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 11. 05.〉

제11조 (회장 후보자 자격요건) ①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4조 제1항과 제2항 및 협회 정관 제25

조에 따른 결격사유 해당자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개정 '20. 11. 05.〉

② 장애인체육회(가맹단체 포함), 시·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지부(가맹단체 시·군·구지부 포함)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읍·면·동장애인체육회 포함)의 회장과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의 임기 만료일 전 7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과 동시에 직무는 정지된다. 다만,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4. 10. 20.〉

③ 〈삭제〉〈'24. 10. 20.〉

제12조 (기탁금)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2천만원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장 후보자 등록 및 공고) ① 후보자가 되려는 자는 후보자 등록기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보자등록신청서의 접수는 공휴일에도 불구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 서식의 후보자 등록신청서〈개정 '20. 11. 05.〉
2. 가족관계증명서
3. 〈삭제 '24. 11. 05.〉
4.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5. 스포츠윤리센터에서 발급한 징계사실유무확인서〈개정 '20. 11. 05. 개정 '24. 10. 20.〉
6.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5호 서식)〈개정 '20. 11. 05.〉
7.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 11. 05.〉
8. 후보자 등록의사표명서(제11조 제2항에 해당하는 후보자에 한함)〈개정 '20. 11. 05. '24. 10. 20.〉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부(별지 제7호 서식)에 등재한 후 후보자에게 접수증(별지 제8호 서식)을 발급한다. 다만, 제2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갖추지 아니한 등록신청은 수리하지 아니한다.〈개정 '20. 11. 05.〉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마감 후에 후보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등 후보 등록 자격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의 정관 및 규약이 정하는 임원 결격사유를 취합하여 회장 임기만료일 전 60일까지 게시하여야 한다.

⑥ 회장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에 회장후보자 명단을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개정 '20. 11. 05.〉

제14조 (등록무효)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후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1. 후보자가 제11조에 따른 후보자의 자격이 없는 것을 발견된 때
2. 제13조 제2항 1호부터 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변조가 발견된 때〈개정 '20. 11. 05.〉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후보자에게 등록무효의 사유를 명시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5조 (후보자 사퇴신고) ① 후보자가 사퇴하려는 경우에는 자신이 직접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후보자 사퇴의 신고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 11. 05.〉

제16조 (회장후보자 정견발표) 회장후보자의 정견발표는 후보자와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선거 및 선거운동

제17조 (선거일)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45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선거운동의 정의)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의사의 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통상적인 업무행위

제19조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개정 '20. 11. 05.〉 후보자는 전화, 명함,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일에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 (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 한다. 단, 제16조에 따른 후보자의 선거당일 정견발표는 예외로 한다.〈개정 '20. 11. 05.〉

제21조 (금지행위) 다음 각호의 해당 행위를 금지한다.

1. 특정인의 인신공격 등 중상비방을 하거나 서명날인 운동을 주동, 선동 또는 참여하는 행위
2. 선거에 관하여 금품수수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3. 입후보자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별도의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선거 종사자를 운영하는 행위
4. 선거관리위원 및 협회 직원이 특정인 지지 옹호, 격려하는 행위〈개정 '20. 11. 05.〉
5. 허위의 이력을 기재하여 배포하는 행위
6.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제22조(별 칙) <삭제 '20. 11. 05.>

제6장 투표 및 개표

제23조(선거방법 등)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한다.

② 투표는 선거인이 직접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한다.

③ 투표는 선거인 1명마다 1표로 하며, 대리인 투표는 허용하지 않는다.

제24조(투표소 설치) <개정 '20. 11. 05.>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소의 설치수, 설치장소 등을 협의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 중에서 투표소에 투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할 투표관리관 1명과 투표사무를 보조할 투표사무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25조(투표용지) ① 투표용지(별지 제11호 서식)에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표시하되, 기호는 후보자의 게재순위에 따라 "1, 2, 3" 등으로 표시하고, 성명은 한글로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한글로 표시된 성명이 같은 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한자를 함께 기재한다. <개정 '20. 11. 05.>

② <삭제 '20. 11. 05.>

③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 후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참여하에 투표용지에 게재할 후보자의 순위를 추첨의 방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첨 개시 시각에 후보자 또는 그 대리인이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지정하는 자가 그 후보자를 대리하여 추첨할 수 있다.

제26조(개표 및 감표위원 선정) <개정 '20. 11. 05.> 선거인단 중 3인의 위원을 개표 및 감표위원으로 선정한다.

제27조(투표) ① 선거인은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본임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인 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 선거인은 투표용지를 받은 후 기표소에서 기표를 한 후 그 자리에서 보이지 않게 접은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한다.

제28조(투표시간) 투표시간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제29조(투표권 제한) 회장후보 출마자는 투표권을 보유할 수 없다.

제30조(개표참관인) 각 후보자는 개표참관인 1인을 선정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별지 제12호 서

식에 의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 하여야 하며, 개표참관인은 개표상황을 참관하여야 한다.
〈개정 '20. 11. 05.〉

제31조 (무효투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자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어느 후보자의 난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3. 2인 이상의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
4. 어느 후보자의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5.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6. 선거인 자신이 투표용지를 공개한 것

제32조 (개표결과 보고서 작성) 감표위원은 개표가 끝난 즉시 개표결과 보고서(별지 제13호 서식)를 작성 날인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 (기탁금의 처리) 기탁금은 득표수에 상관없이 협회 발전기금으로 귀속된다.〈개정 '24. 10. 20.〉

제7장 당선 결정

제34조 (회장 당선인 결정) ①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다수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개정 '20. 11. 05.〉

제35조 (회장 당선인 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장 당선인이 결정되면 선거일 다음날에 즉시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거 회장 당선인을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 11. 05.〉

제8장 보 칙

제36조 (재선거)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무효결정이 있는 경우

제37조 (보궐선거) ① 회장이 퇴임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그 임기는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운영규정 제12조 제10항 및 협회 정관 제23조에 따라 정한다. 개정'24. 1. 0. 20.' ② 보궐선거는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와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개정 '20. 11. 05.〉

제38조 (제한) 제6조에서 정한 선거인(시·도지부의 장, 전국규모연맹체의 장, 선수·지도자·

심판 대표)를 협회 회장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새롭게 선출하지 않을 경우 협회 회장선거 투표권을 제한한다. 다만, 협회 회장 임기만료일을 경과하여 임기가 남은 선거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 11. 05. >

제39조 (규정의 해석) 이 규정은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된 규정에 대하여 개정이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2016. 9.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2020. 11. 0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부 칙(2024. 10.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공 고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제00대 회장선거 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후보자 등록

년 월 일 시까지

2. 후보자 등록 공고

년 월 일 시

3. 회장선거

일시 : 년 월 일 시

장소 :

년 월 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별지 제2호 서식]

선 거 인 명 부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후보자 등록신청서

- 성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
- 등록기준지 :
- 주소 :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직업 :
- 학력 :
- 경력 :

년 월 일 실시하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회장선거에 후보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대한장애인배구협회 귀중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각 1부(통).
- 이력서 1부.

-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이력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신설 '24.00.00.>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성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00대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정관 및 회장선거 관리규정에 따른 관련사항과 절차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동 등록의사 표명서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사무국에 제출합니다.

※ 관련 신분상의 변화

- 단체장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선거 일까지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부회장이 직무대행
- (단체장 제외)비상임 임원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 까지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불가

년 월 일

성명 (서명)

대한장애인배구협회 귀중

첨부자료: 소속단체가 발행한 임원확인서

(별지 제5호 서식)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본인은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제0대 회장에 입후보하면서 정관 제25조
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또한, 사실이
아닐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⑨

대한장애인배구협회 귀중

[별지 제6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선거 후보자 제출 양식]

대한장애인배구협회는 회장선거 후보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구분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필수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학력,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등 2. 기타 후보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후보자 본인 확인, 자격 검정, 선거 후보자 공보 발송	<u>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1년 보관</u>
	전화번호, 이메일 등	선거 관련 안내문 발송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수위원장 선거 등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대한장애인 배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1.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업, 학력, 경력, 전화번호, 이메일 2. 결격사유	선거 후보자 검증	<u>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u>
대한장애인 체육회		선거 민원업무 관련 처리	<u>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u> <u>1년 보관</u>

※ 위의 개인정보 제공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고지 받았습니다. (예, 아니오)

四〇九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대한장애인배구협회 귀중

[별지 제7호 서식]

제00대 회장 후보자 등록부

년 월 일

[별지 제8호 서식]

제00대 회장 후보자 접수대장

[후 보 자]

-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직업 (직위) :
 접수일자 : 년 월 일
 접수번호 :

상기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확인자 :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직위) (성명) (인)

——— 절 —————— 취 —————— 선 ——————

접 수 증

- 후보자 성명 : (한자 :)
 생년월일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직업 (직위) :
 접수일자 : 년 월 일
 접수번호 :

상기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회장 (인)

[별지 제9호 서식]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제0대 회장선거의 후보자가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기호	성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비고

년 월 일

대한장애인배구협회

[별지 제10호 서식]

회장 후보 사퇴서

본인은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회장에 입후보했으나 사정으로 인하여
회장 후보자에서 사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

대한장애인배구협회 귀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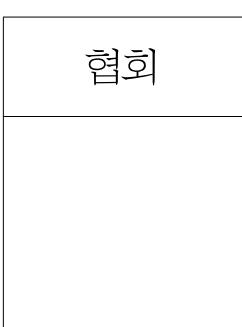
[별지 제11호 서식]

연번

제00대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회장선거 투표용지

감표자	
성명	서명

기호	1	2	3	4
후보자성명				
기표란				



[별지 제12호 서식]

개표 참관인 신고서

년 월 일 실시하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회장선거의 개표참관인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후보자 성명 :

2. 개표참관인 인적사항

번호	소속	성명	성별	생년월일	비고

년 월 일

신고자 : (인)

대한장애인배구협회 귀중

[별지 제13호 서식]

개표 결과 보고서

제○○대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회장선거 개표결과

기호	후보자 성명	득표수
		표
		표
		표
		표

년 월 일 실시한 대한장애인배구협회 제0대 회장선거의 개표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감표위원 : (인)

감표위원 : (인)

감표위원 : (인)

대한장애인배구협회 회장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0대 대한장애인배구

협회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 성명 :

○ 생년월일 :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대한장애인배구협회